

2010. 12. 16.(목) 10:00
제1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 회 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보고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경기]

【목 차】

1.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1
2.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	5
3. 거창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8
4.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11
5.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안-----	13
6. 거창군민장에 관한 조례안-----	17
7.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8.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9. 거창군세 기본 조례안-----	28
10. 거창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11.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12.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13.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14.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15.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4
16. 거창군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7
17. 거창승강기신설밸리 선도기업체 투자유치지원계획 동의안-----	49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11. 1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11. 1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0. 12. 16
- 마. 의안번호: 제2010 - 57호

2 제정이유

- 상위 법령인 「국민제안규정」의 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의 전부개정에 따른 운영절차의 개선과 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의 필요에 따라,
- 행정의 능률 향상 및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한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현행 군민아이디어와 공무원 제안 제도를 통합·개선하여 제안제도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포함한 제안, 공모제안, 채택제안, 자체우수제안, 실시제안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나.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를 모든 국민과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제안의 제출방법과 제안의 접수 및 보완,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

- 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다. 공모제안의 모집과 심사,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모계획에 따라 처리하되,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7조).
- 라.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기간과 채택 여부 결정사실의 통지, 제안의 심사기준, 불채택제안에 대한 재심사 요청 등 제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마.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과 우수제안심사위원회 추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부서별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바. 우수제안의 등급 결정 및 시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거창군 우수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함(안 제10조).
- 사. 우수제안의 등급을 최우수, 우수 및 장려로 구분하고, 등급을 부여 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표창하거나 정부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제안은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안에 대한 시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 아. 채택제안 실시에 따른 제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와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우수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부상금 지급기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후의 부상금 지급방법, 공무원의 채택제안이 직무발명 또는 직무고안이거나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의 그 권리의 승계 등 제안에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 자. 채택제안 및 불채택제안의 관리기간과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계획의 수립·시행,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차.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업무 종사자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준용, 조례의 세부시행에 따른 규칙 위임사항을 보칙으로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제안규정」의 제정과 「공무원의 제안규정」이 개정 운영됨에 따라 군민제안과 공무원 제안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능율 향상과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현행 제안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를 전 군민 및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우편이나 인터넷 등 제안제출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별로 “제안심사 실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에서 추천된 제안에 대하여 등급결정 및 시상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거창군 우수제안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군정 조정 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함
- 또한 우수제안의 등급은 최우수, 우수, 장려로 구분하며 각 5만 원이상 50만원이하의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별표1)과 예산절감, 재정수입 증대 및 행정개선 등의 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최저 5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별표2)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채택된 제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군수는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 밖에 조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 ·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보면은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제도로서 군민제안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조례임에도 공무원이 아닌 군민제안자에 대한 부상금의 지급기준(안 제14조)을 보면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시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는데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상금 외에 인사상 특전 및 상여금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와 조례제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그 밖에 조례제정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11. 1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11. 1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0. 12. 16
- 마. 의안번호: 제2010-58호

2. 제정이유

군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신고사항의 처리,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공직내부의 청렴도 향상과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사람의 신고의무 및 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여부 조사방법 및 처리기간을 정함(안 4조)
- 라. 감사부서 직원은 신고의 접수,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신고자가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신분상 불이익 시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바.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자 문책 등 신고자의 신변보호 장치를 규정함(안 제7조).

사. 피신고자가 보복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보복행위 시 사실조사 를 통해 징계조치 등 보복행위 금지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아.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도 신고자와 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자. 거짓신고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는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거짓신고를 예방도록 함(안 제10조)

차.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을 정함 (안 제11조).

○ 지급방법: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급

○ 지급 상한액: 2천만원

카. 포상금 지급의 제외대상을 정함(안 제12조).

타. 포상금을 지급한 후 지급제외 대상에 대한 환수 근거를 정함 (안 제13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우리군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공직내부의 청렴도 향상 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로서

○ 그 주요 내용을 보면

- 부조리 행위를 목격하거나 인지한 공무원 및 군민은 인터넷, 우편,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신고의무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 관련부서의 직원은 신고의 접수 및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신고자의 비밀 보장을 규정함.

- 신고자가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신분상 불이익

시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또한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지급상한액 2천 만원) 및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어 공직자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이 밖에 조례제정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 거창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11. 1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11. 1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0. 12.16
- 마. 의안번호: 제2010-59호

2.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게 하고, 그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설치근거 등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 위원회는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와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함
- 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11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군의회의원,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
 -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그 밖에 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위원회, 간사, 관계 기관 등에 의 협조 요청, 수당, 운영세칙 등 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제정안은 장애인 복지법(2010. 7. 1시행)에서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 조사 · 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 복지 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 조사 · 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장애인 복지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역할에 대한 사항과 위원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위원의 수당 등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설치와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서 향후 장애인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 밖에 조례제정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2010. 11. 1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11. 1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0. 12. 16
- 마. 의안번호: 제2010-60호

2. 제정이유

「아동복지법」 제6조에서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거창군 아동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구성 및 운영과 아동위원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위원의 활동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가.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위하여 설치하는 거창군 아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 나. 아동위원의 역할에 관하여 규정함(안제2조)
 -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파악 등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업무를 수행하며
 -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아동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도록 함

- 다.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라. 아동위원의 원활한 활동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규격과 기재사항을 정함(안 제9조, 별표).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이 개정·시행(2010. 7. 5시행)됨에 따라 아동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역할에 관하여 규정하며 아동복지위원회는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복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11. 1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11. 1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0. 12. 16
- 마. 의안번호: 제2010-61호

2. 제정이유

군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그 세대의 구성원인 손자녀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손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 나.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지원대상은 조손가정으로서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포함한 세대로 하되, 손자녀가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포함
 - 조부모의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하되, 65세 미만이더라도 조부모가 3개월 이상 무직이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다.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내용을 계층별로 구분하여 규정함(안제4조)
 - 제1계층(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거

나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세대) : 조손가정수당, 명절위로금, 학습지원, 성장지원

○ 제2계층(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 : 학습지원, 성장지원
라.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 방법과 지원수준의 결정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조손가정 지원사업은 예산사업(조손가정수당, 명절위로금)과 민간 후원을 활용한 비예산사업(학습지원, 성장지원)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예산사업에 대하여도 그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의 수준은 예산 사정과 다른 제도에 따른 급여 내용 및 민간후원의 확보 정도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정하도록 함

마.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실조사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지원대상자는 지원을 희망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조손가정에 지원내용을 알려 신청을 권고할 수 있음

○ 군수는 지원신청이 있으면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과 가족관계 등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을 준용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바. 조손가정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확보에 관하여 규정함(안제8조)

○ 군수는 조손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되, 비예산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 모금회에서 실시하는 지정기탁을 권고할 수 있음

사. 조손가정 지원사업의 세부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조손가정수당(세대당 월 5만원)과 명절위로금(세대당 20만원, 설·추석명절 연 2회)은 지원대상자 개인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되, 다른 사업으로 현금지원이 추가될 때에는 이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학습지원 및 성장지원 등의 인적·물적서비스는 시기를 고려하여 지원함

- 아. 지원대상자의 명단 및 다음 연도 사업추진계획의 보고에 관한 사항과 지원대상자에 대한 연간조사계획의 수립 및 소득 등 변동사항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자.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 중지사유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을 중지하여야 하는 사유로는 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였거나 세대구성원의 변동으로 요건을 상실한 경우, 연령 초과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로 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조손가정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손자녀의 바른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지원대상은 조손가정으로서 18세미만의 손자녀와 65세이상의 조부모로 구성된 가정으로 하며
 -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은 계층별(제1계층, 제2계층)로 구분하며 예산사업, 비예산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함.
 - 조손가정 수당은 세대당 월5만원으로 하며, 명절위로금은 세대당 20만원을 지원함.
 - 또한 조손가정으로 지원받든 자가 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등 지원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최근 경제적 어려움과 이혼가정의 증가 등으로 조손가구가 증가

하는 추세에 있어 본 조례의 제정·운영으로 조손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검토되었음.

- 다만, 안 제2조(정의) 제1호 가목내지 나목에서는 지원대상 세대 중 소년소녀가정 아동양육비(월10만원) 또는 가정위탁 아동양육비(월10만원)등 공적 지원금을 받고 있는 세대에 대하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손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조례제정의 목적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공적지원금(월1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조손가정에 대하여도 지원(월5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본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군내의 조손가정 현황과 소요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민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11. 1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11. 17
- 마. 상정 및 의결일자: 2010. 12.16
- 마. 의안번호: 제2010-62호

2. 제정이유

지역사회 또는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葬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적 존경과 애도의 뜻을 표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가. 군민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의의식 중에서 영결식으로 한정함(안 제2조).
- 나. 군민장은 지역사회 또는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이나 국내·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군의 명예를 빛낸 사람이 사망한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함(안 제3조).
- 다. 군민장 대상자의 결정 방법 및 그 대상자 결정을 위한 군민장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군민장 대상자는 군민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 또는 군의회의장의 제청으로 군민장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

정함

○ 군민장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군의회의원, 학계, 언론계 및 기관·단체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민장 대상자가 결정되면 해촉된 것으로 봄
- 그 밖에 위원장의 직무, 회의개최, 간사 및 서기 등 세부운영에 관하여는 군민장 장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용

라. 군민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군민장장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2조)

○ 위원회의 관장사항

- 영결식의 일시, 장소, 방법 및 의식에 관한 사항
- 영결식에 드는 경비의 범위와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

○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은 도의원, 군의회의원, 학계, 언론계, 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원, 고인의 친지 중에서 필요한 수를 위원장이 위촉하되, 장의 절차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봄

○ 고문: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함

○ 집행위원

- 위원회의 직무 집행을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약간명의 집행 위원을 두되, 원활한 장의집행을 위하여 각각 군 소속 공무원과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 간사 및 서기는 각각 군민장업무 담당과장과 군민장업무 담당주사가 됨

마. 장의 공고, 장의 기간 및 군민장 소요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군민장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 명의로 신문이나 군 공보
· 홈페이지 등에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 장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의 범위에서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 군민장에 드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지원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군에서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

바.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장·국민장의 장
례 의식제도와 절차를 준용토록 함(안 제16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또는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를 군민장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군민장은 지역사회 또는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서
군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이나 국내·외에서 큰 업적을 남긴자로
하였으며,
 - 군민장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군민장 선정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군민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군민장 장의 위원회와 집행위
원을 임명 추진함
 - 장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이내로 하고 장재비용의
일부를 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다만, 안 제4조 제3항에는 「군민장 선정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안 제7조 제2항의 「장의위원장」은 군수가 맞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민장 선정 심의위원회는 군민장 대상자 선정과 장의규모 등을
결정하며, 대다수 군민들의 동의와 참여 속에 장의를 엄숙하고 경

건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책임이 막중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의 위상을 높여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변경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이 밖에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조례의 형식 및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11. 1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11. 17
- 마. 상정 및 의결일자: 2010. 12.16
- 마. 의안번호: 제2010-63호

2. 개정이유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선도적 자치단체로 도약하기 위하여 행정 수요에 맞게 실과단 및 사업소 조직을 신설·폐지·분리·변경하고, 사무를 분장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실과단 및 사업소 신설·폐지·분리하고 명칭을 변경함(안 제3조).

- 신설: 창조정책과
- 폐지: 1010추진단, 수승대관광지관리사무소
- 분리: 산림환경과 → 산림녹지과, 녹색환경과
- 변경: 건설과 → 건설교통과

나. 부서장의 사무를 분장 및 조정함(안 제3조, 제7조).

- 창조정책과장
 - 사무분장: 교육, 창조도시 전략 및 사업, 인구, 승강기산업, 자전거 업무
- 재무과장

- 사무인수: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
- 민원봉사과장
 - 사무이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
- 경제과장
 - 사무신설·인수: 사회적기업,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업무
 - 사무이관: 교통행정 및 운수 업무
- 산림녹지과장
 - 사무신설·인수: 임산물 및 화강석 육성 업무
 - 사무이관: 환경관리, 환경정비, 수질관리 업무
- 녹색환경과장
 - 사무신설·인수: 환경관리, 환경정비, 수질관리, 녹색성장 업무
- 농업기술센터소장
 - 사무신설: 농기계 임대서비스 및 귀농인 지원 업무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민선5기를 맞이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구와 조직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 그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1010추진단을 폐지하고 창조정책과를 신설하며 수승대 관광지 관리사무소를 문화관광과로 통합하였으며
 - 기존의 산림환경과를 산림녹지과, 녹색환경과로 분리하고 현 경제과 소관의 교통관련 업무를 건설과로 이관하여 건설교통과로 변경하였음.
 - 이 밖에 각 부서별 부장사무를 현실에 맞게 신설 · 이관하는 등 정비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 행정기구 정비계획 보고(의회): 2010. 10. 19(화)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11. 1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11. 17
- 마. 상정 및 의결일자: 2010. 12. 16
- 마. 의안번호: 제2010-64호

2. 개정이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정하고,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2).

- 4급 이상: 1% 이내(현행) → 1% 이내(현행과 같음)
- 5급 : 6% 이내(현행) → 6.2% 이내(조정 : 증 0.2%)
- 6급 : 28% 이내(현행) → 28.2% 이내(조정 : 증 0.2%)
- 7급 : 31% 이내(현행) → 31% 이내(현행과 같음)
- 8급 : 25% 이상(현행) → 25% 이내(현행과 같음)
- 9급 : 9% 이상(현행) → 8.6% 이상(조정 : 감 0.4%)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5급 정원 : 증 1명
 - 현행: 29명(본청10명, 의회3명, 직속기관1명, 사업소3명, 읍1명, 면11명)
 - 조정: 30명(본청11명, 의회3명, 직속기관1명, 사업소3명, 읍1명, 면11명)

-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감 2명
 - 현행: 478명(본청217명, 의회5명, 직속기관63명, 사업소31명, 읍33명, 면129명)
 - 조정: 476명(본청221명, 의회5명, 직속기관63명, 사업소27명, 읍32명, 면128명)
- 일반직+지도직 6급 상당 : 증 1명
 - 현행: 14명{직속기관(기술센터) 14명}
 - 조정: 15명{직속기관(기술센터) 15명}
- 연구직: 증 1명
 - 현행: 3명{직속기관(기술센터) 2명, 사업소1명}
 - 조정: 4명{직속기관(기술센터) 3명, 사업소1명}
- 지도직: 감 1명
 - 현행: 18명{직속기관(기술센터) 18명}
 - 조정: 17명{직속기관(기술센터) 17명}
- 기능직: 증감없음
 - 현행: 76명(본청40명, 의회6명, 직속기관4명, 사업소14명, 읍5명, 면7명)
 - 조정: 76명(본청43명, 의회6명, 직속기관5명, 사업소11명, 읍4명, 면7명)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조정하고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 현행 정원은 645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본청의 정원은 업무이관 등으로 274명에서 282명으로 직속기관은 122명에서 124명으로 사업소는 49명에서 42명으로 조정하고 읍면은 186명에서 183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 행정기구의 개편과 업무조정에 따라 인력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 공무원정원 조정계획 보고(의회): 2010. 10. 19(화)

【기관별, 직급별 정원현황(안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645	282 (274)	14	124 (122)	60 (57)	64 (65)	42 (49)	37 (39)	146 (147)
정무직 계	1	1							
군수	1	1							
일반직 계	510 (511)	235 (230)	8	65	17 (16)	48 (49)	30 (34)	33 (34)	139 (140)
4급	1	1							
4~5급	3	2		1		1			
5급	30 (29)	11 (10)	3	1		1	3	1	11
6급 이하 계	476 (478)	221 (217)	5	63	17 (16)	46 (47)	27 (31)	32 (33)	128 (129)
일반직+지도직 계	19 (18)			19 (18)	19 (18)				
5급 상당	4			4	4				
6급 상당	15 (14)			15 (14)	15 (14)				
일반직+연구직 계 (6급 상당 이하)	2	2							
별정직 계 (6급 상당 이하)	16	1		15		15			
연구직 계 (연구사)	4 (3)			3 (2)	3 (2)		1		
지도직 계 (지도사)	17 (18)			17 (18)	17 (18)				
기능직 계	76	43 (40)	6	5 (4)	4 (3)	1	11 (14)	4 (5)	7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세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11. 1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11. 17
- 마. 상정 및 의결일자: 2010. 12. 16
- 마. 의안번호: 제2010-65호

2. 제정이유

-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3개법으로 분법('10.3.31 공포, '11.1.1 시행)됨에 따라 현행 군세조례 중 총칙분야를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하고,
- 현행 「거창군세 부과징수규칙」에 규정된 사항 중 주민들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조문을 조례로 이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제1장 총칙: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세목,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송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 나. 제2장 부과징수: 군세의 수납, 군세환급금 통지, 징수유예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25조까지).
- 다. 제3장 체납처분: 재산의 압류, 공매처분유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46조까지).

라. 제4장 보칙: 거창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제정안은 종전의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공포·시행(2011. 1. 1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현행 군세조례 중 총칙분야를 기본조례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현행 거창군세 부과·징수규칙에 규정된 사항 중 주민들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납세자의 권한 신장과 지방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1장 총칙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함께 지방세목을 종전의 8개 세목을 5개 세목으로 개편하였으며
※ 지방세 개편내역
 - ⇒ 종전(8): 주민세, 재산세, 도시계획세(목적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행세, 도축세
 - ⇒ 개편(5): 주민세, 재산세(재산세 + 도시계획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자동차세 + 주행세),
(도축세 폐지 ⇒ 2010년도 세입: 421,000천원)
 - 제2장에서는 군세의 수납, 군세 환급금 통지, 징수유예 등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3장에서는 재산의 압류, 공매처분 유보 등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과
 - 제4장 보칙에서는 거창군 지방세 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전면적인 개편에 따라 경남도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등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 거창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11. 1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11. 17
- 마. 상정 및 의결일자: 2010. 12. 16
- 마. 의안번호: 제2010-66호

2. 개정이유

-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법으로 분법('10.3.31 공포, '11.1.1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 체계에 맞추어 현행 군세조례 중 개별 세목 분야를 군세조례로 분리하여 개정하고,
-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16개→11개)에 따른 세목체계 개편사항과 관련 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지방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제1장 총칙: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제2장 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장부 비치·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다. 제3장 주민세: 균등분·재산분의 세율 및 재산분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라. 제4장 지방소득세: 소득분·종업원분의 세율 및 종업원분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마. 제5장 재산세: 세율, 중과대상지역,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과세특례, 납기,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23조)
- 종전의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통합하여 재산세로 함
- 바. 제6장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부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종전의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통합하여 자동차세로 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분법시행(2011. 1. 1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의 체계에 맞추어 현행 군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그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군세의 세목을 현행 8개 세목 중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통합하여 재산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통합하여 자동차세로 개편하였으며 또한 축산농가의 지원시책 일환으로 도축세를 폐지(도축세 폐지로 인한 군세 421백만원 정도 감소예상)하는 등 5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음.
- 기타 세목별 세율 등은 현행 조례와 동일하며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조례의 체계 등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11. 1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11. 17
- 마. 상정 및 의결일자: 2010. 12. 16
- 마. 의안번호: 제2010-67호

2. 개정이유

○ 지방세법 분법으로 지방세 비과세 규정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현행 감면조례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사항을 반영하는 등 2011년 지방세 감면조례 자율제정제도 시행에 앞서 금년 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현행 감면조례에 한하여 일몰을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지방세 비과세 규정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현행 감면조례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내용 등을 삭제함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29조 이관)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20조 이관)
 -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44조 이관)
 - 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42조 이관)
 -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14조 이관)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감면일몰, 전방조종차량 감면조항 지특법 제67조 이관)
-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지방세법 부칙 개정)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31조 이관)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83조 이관)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16조 이관)
-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84조 이관)
-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81조 이관)

나. 기존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세목통합 감면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안 제3조)
-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안 제4조)
-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안 제5조)
- 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6조)
-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안 제10조)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안 제11조)

다. 감면대상 추가: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안 제16조).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과 같은 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다. 그 밖의 명칭변경

-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안제9)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분법되면서 지방세 비과세 규정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되어 현행 군세감면조례에서 규정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에 따라 그 개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금년말로 감면시한이 만료되는 일부 조항에 한하여 그 일몰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 그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지방세 비과세 규정 중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조항 등 13개 항목을 현행 감면조례에서 삭제하였다.
- 현행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통합하여 “재산세”로 세목을 변경함에 따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조항을 재산세 면제(6개 항)로 개정 하였고
-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면제도록 하는 등 감면대상을 추가하였다.
- 또한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0. 12. 31까지에서 2011. 12. 31까지로 감면시한을 1년간 연장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이 밖에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조례형식 및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11. 1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11. 17
- 마. 상정 및 의결일자: 2010. 12. 16
- 마. 의안번호: 제2010-68호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의 개정에 따라 지역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교부 민원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에 맞게 수수료의 명칭과 징수기준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수수료 금액과 명칭 등을 정비함(안 별표 1, 별표 1의2).
 - 불필요한 수수료 항목 삭제
 -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삭제(관리대장 사본 교부)
 - 수수료 금액 및 명칭 변경
 -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법인 5,000원/개인 3,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800원)
 - 2) 공유재산의 대부(연장) 신청

- ⇒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기간연장) 신청
- 3)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24,000원)
 ⇒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4,000원)
- 4)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
- 5)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신고)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
-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컬러발급 또는 도면첨부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컬러 발급의 경우)
- 7) 자동차등록원부(관외)(1,000원)⇒자동차등록원부(관외)(200원)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행안부령 2010. 9. 17시행)”과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단순 증명 민원에 대한 수수료의 명칭과 징수기준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라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할 수 있다

- 그 개정내용을 보면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재교부: 5000원 → 800원
 -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교부: 24,000원 → 4,000원
 -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관외): 1,000원 → 200원으로 수수료율을 변경하였으며, 기타 수수료율은 현행과 같음.

※ 2010년도 수수료 징수내역: 6건 16,000천 원

- 이 밖에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조례의 형식 및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11. 1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11. 17
- 마. 상정 및 의결일자: 2010. 12. 16
- 마. 의안번호: 제2010-69호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징수촉탁제 활성화를 위하여 타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세 징수금을 촉탁받아 징수한 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촉탁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징수촉탁교부금을 받음으로써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신설하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목적조항을 간명화 함(안 제1조).
- 나.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및 제3조제7호 신설).
 - 지급대상: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 지급기준: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 다. 체납액 징수에 따른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는 ‘세입금’의 범위를 군세와 세외수입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3항).

라. 지방세법 징수포상금의 지급신청 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제7조).

- 포상금의 지급은 사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함
 - 읍·면 공무원의 관련서류 첨부 일괄신청에 관한 협행 제7조제1항 단서 규정은 시·군 공무원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포상금을 지급 신청할 경우에 대한 절차로서 삭제함

마.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징수촉탁제도가 신설 (2011. 1. 1시행)운영됨에 따라 징수촉탁 교부금의 일부를 징수한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지방세기본법의 제68조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징수촉탁 교부금으로 징수금액의 30%를 징수한 자치단체에 지급함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징수촉탁교부금의 10/10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임.

※ 징수포상금 지급내역: 2009년도 11명 3,534천원

2010년도 4명 967천원 (하반기 분 미지급)

- 다만, 체납세 징수 포상금은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지급하고 있으나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으므로 제도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11. 1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11. 17
- 마. 상정 및 의결일자: 2010. 12. 16
- 마. 의안번호: 제2010-70호

2.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도로명 주소의 고지와 관련하여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군수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한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직접 방문하여 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신설).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법」 및 「거창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 주소 고지 및 홍보를 위하여 현장 방문(이·동장)을 하는 경우 실비를 변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로서 도로명 주소사업의 군민홍보와 빠른 정착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11. 1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11. 17
- 마. 상정 및 의결일자: 2010. 12. 16
- 마. 의안번호: 제2010-71호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상 특정기관의 설립과 목적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만 ‘공공기관’으로 인정하고 군비를 출연할 수 있으나, 거창군장학회는 지원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출연이 불가하여 거창군장학회의 목적과 설립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지방재정법상 ‘공공기관’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재단법인의 등기 명칭에 따라 제명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나. 장학회의 설립과 목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지역인재의 발굴·육성 및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학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를 설립하고, 장학회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함

다. 장학회의 정관과 임원, 이사회 및 사무국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장학회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이사와 감사는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되 거창군수, 거창군의회의장,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은 당연직 이사로 함

○ 장학회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두도록 하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정하도록 함

라. 장학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과 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장학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에 관련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거창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 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

마.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관한 군 출연금·보조금 등의 재정지원과 공유재산의 지원, 관련 사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공무원의 인력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바. 그 밖에 장학회의 운영상황, 재정지원 등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과 운영 실태 감사결과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의 장학금 출연이 불가함에 따라 민법 등의 규정에 의거 장학회의 설립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재단법인의 등기명칭에 따라 제명을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 법인 설립에 따른 정과, 사업, 임원, 재산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또한 장학회의 사업을 설립목적에 맞게 규정하고 군의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과 사무국 설치에 따라 군의 인력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이 밖에 상위법령의 위반사항이나 조례의 형식 및 체계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11. 1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11. 1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0. 12. 16
- 마. 의안번호: 제2010-75호

2. 제안이유

장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직업상담, 훈련, 재활공간을 마련하고자 직업재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현황 >

- 소재지 :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311-1번지
- 사업규모 : 부지 2,560m²/ 건물 2,328m²(지상 3층)
- 사업비 : 3,379백만원 ○ 준공 : 2012년 12월
- 내부시설
 - 1층(776m²): 목욕장, 상담실
 - 2층(776m²): 직업훈련실, 작업장
 - 3층(776m²): 단체(단체, 시각, 농아인)사무실 및 회의실

3. 취득재산의 표시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천원)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 유 자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1필지	2,560	99,584			
1	과수원	거창읍 대동리 311-1	2,560	99,584	2011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신축	이옥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부지 매입안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직업상담, 훈련, 취업, 재활 등 장애인의 자활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거창읍 대동리 311-1번지에 부지 2,560m² 연건평 2,328m²(3층)규모로 신축하며 그 소요 사업비는 총 3,379백만원으로서
- 본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3,397백만원) 확보계획과 향후 시설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선도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11. 1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11. 1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0. 12. 16
- 마. 의안번호: 제2010-77호

2. 제안이유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 승강기산업밸리 내 대규모 투자기업(선도기업)에 대하여 특별지원코자 하며
-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사)승강기밸리 기업 협의회로부터 거창 승강기밸리 내 투자하고자 하는 선도기업에 대하여 특별지원 요청(2009. 2. 11)
[특별지원 요구사항]
 - 입지보조금: 금년 12월까지 투자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산업단지 분양가의 90% 지원
 - 투자(시설, 설비)보조금: 시설비 중 융자상환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이자발생분 중 기업체는 1% 부담

- 물류비 지원: 거창이전에 따른 추가발생 물류비 적자분 3년간 지원
- 위 지원요청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코자 함.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

가. 지원대상

- 국내기업으로서 투자금액 5백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 300명이상

나. 지원내용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조례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가능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제14조]

가. 지원대상: 승강기산업밸리에 창업, 이전, 신설, 증설하는 기업체

나. 지원내용

- 수도권 이외의 기업이 승강기 밸리 투자시 국가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가능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조례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가능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거창 승강기 산업밸리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 등의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승강기산업밸리의 성공을 위하여는 초기 투자한 기업체가 성공한 기업으로 평가를 받아야만 후속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원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특별 지원시 소요예산 판단]

□□ 재원별 소요예산 [일반산단 5만평 입주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타(민자)
계	257.53	10.34	26.63	188.94	31.62
입지 보조금	134.99	10.34	0.43	124.22	
시설자금 이차지원	85.40		26.20	59.20	
물류비 손실보전	5.52	-	-	5.52	-
주 거 지 원	31.62	-	-		31.62

□□ 군비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계	~ 2010	2011	2012	2013 ~	비고
계	188.94	-	65.95	51.78	71.21	
입지 보조금	124.22	-	55.95	43.52	24.75	
시설자금 이차지원	59.20	-	7.00	7.00	45.20	
물류비 손실보전	5.52	-	3.00	1.26	1.26	

○ 다만,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정 비율의 거창 군민 체용의무와
- 이차보전금의 경우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의 신용등급이 각각 상이함으로 일정 비율의 이자를 보전하고 나머지 부문은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조건을 부과하여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